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925

발의연월일: 2025. 2. 6.

발 의 자:이연희·박 정·복기왕

윤종군 • 한민수 • 박상혁

허종식 • 한준호 • 임미애

정준호 · 김남희 · 문진석

이춘석 · 김윤덕 · 이정문

서미화 · 손명수 의원

(179]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자체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.

그러나, 1996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 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지정 실적이 없는 상황임.

또한,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이나 「도시교 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 유사한 제도를 활 용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음.

이에 불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노외주 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6항 삭제).

법률 제 호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6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2조(노외주차장의 설치 등) ①	제12조(노외주차장의 설치 등) ①		
~ ⑤ (생 략)	~ ⑤ (현행과 같음)		
⑥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	<u><</u> 삭 제>		
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			
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			
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			
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			
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			
다.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			
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			
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		
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			
<u>정한다.</u>			